

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

제 정 2021. 1. 4.
개 정(1) 2021. 5. 26.
개 정(2) 2022. 6. 15.
[전부개정 2023. 4. 13.](#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 「주택금융연구」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주택금융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이 간행하는 학술지 「주택금융연구」(이하 "학술지"라 한다)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"편집위원회"라 한다)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

제3조(편집위원회 목적) 학술지 편집과 간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
제4조(구성 및 선임 등)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편집위원 15인 이내,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시 간사를 대신하여 3인 이내의 간사단을 둘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주택금융연구원장(이하 "연구원장"이라 한다)이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.

1. 박사학위 소지자

2.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연구논문 3편 이상 게재

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학계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선임한다.

④ 연구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년씩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역할)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 위촉, 논문 심사의뢰,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제반업무와 행정사항 총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논문 심사위원 추천
2.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
3.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
4.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 의견 중재
5. 최종 게재 논문의 선정
6. 게재 순서의 결정
7. 투고자의 논문 사용에 대한 동의
8. 학술지 간행 횟수 및 간행일 변경
9. 그 밖에 학술지 간행에 필요한 사항

③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, 회의록 관리, 투고 논문 접수와 편집, 심사 등 학술지 간행에 따른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.

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운영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,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 및 심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, 편집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 의결)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온라인 방식 회의 및 서면회의 출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온라인 방식 회의의 경우 화상회의 참가자 수
2. 서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회신서면(전자우편 회신을 포함한다) 수

제9조(회의비 및 자문료)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논문 심사위원

제10조(위촉)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가 적절한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논문 한 편당 3명을 위촉한다. 다만,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이 심사위원의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,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 자격에 적합한 심사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.

제11조(자격)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

1. 주택·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2. 주택·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
3.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
4. 그 밖에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자

제12조(심사위원의 제척 등) ① 심사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관련 분야의 다른 심사위원이 심사한다.

② 심사위원이 속한 기관의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다.

제13조(심사료)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 내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4장 논문투고 및 심사

제14조(논문투고 및 접수) ①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내외 주택금융

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, 객관적 실증 분석 연구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정규논문에 한하며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투고일 현재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, 다른 간행물에 투고한 논문은 그 간행물에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에 투고할 수 있다.

③ 투고 논문은 공사의 논문투고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접수 시 저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논문 원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1. [별지 제1호]의 "논문 투고 신청서"
2. [별지 제2호]의 "저작권 양도 동의서"
3. [별지 제3호]의 "연구윤리 서약서"
4. [별지 제4호]의 "연구윤리 자가점검표"
5.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

④ 논문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날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접수하며, 접수일은 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짜로 한다.

⑤ 간사는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제15조(논문심사) ① 논문 심사는 적격심사와 본심사의 순서로 하며,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본심사를 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[별표 1] "논문 작성지침"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,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"부적격" 사실을 통보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[별지 제5호]의 "논문 심사요청서"를 통하여 심사위원회에게 본심사를 의뢰하고,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위원회에게 송부한다. 논문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심사를 하되, 재심은 7일 이내에 한다.

④ 심사위원은 기일에 맞춰 [별지 제6호]의 "논문 심사 의견서"와 [별지 제7호]의 "심사위원 서약서"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⑤ 심사위원은 접수 논문에 대해 '게재 가능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', '게재 불가' 중 하나를 판정한다. 이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[별표 2] "심사 판정기준"에 따른다.

⑥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목적의 명확성과 연구주제의 중요성
2.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
3. 연구방법의 적절성

4. 연구자료의 신뢰성

5.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

6.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

⑦ 논문심사 판정결과에 따라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'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1. 편집위원회는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'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인적 사항을 삭제한 [별지 제6호] "논문 심사 의견서"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청

2. 논문수정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수정의 난이도 및 간행일정 등을 고려해 기간의 가감 가능

3. 수정논문 제출 시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대해 [별지 제8호]의 "수정사항 답변서"를 함께 제출

⑧ '수정 후 재심' 판정에 따라 수정된 논문의 재심 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가 논문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, 기간 내 미제출 시 '게재 불가'로 처리

2. 재심은 초심에서 '수정 후 재심'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실시하며, 재심 심사위원은 '게재 가능', '수정 후 게재', '게재 불가' 중에서만 판정

3. 재심은 1회에 한함

⑨ 편집위원회는 [별지 제6호]의 "논문 심사 의견서"를 첨부하여 [별지 제9호]의 "심사결과 통보서"를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.

⑩ 최종 판정은 '게재 가능/수정 후 게재'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제16조(이의제기)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, 수정 요청내용,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를 들어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판단하며, 투고자는 최종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7조(정보보호의무) ①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,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.

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.

제5장 논문 게재 및 간행

제18조(논문 게재) ① 제15조제9항에 따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,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②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을 해당 호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투고자는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·배포,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에 동의해야 한다.

제19조(원고료)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저자가 복수일 때에는 [별지 제1호]의 "논문 투고 신청서"상 기재된 기여율대로 각 저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.

제20조(간행 및 배포) ① 학술지는 연 2회 간행하고 간행 일자 6월 30일, 12월 31일로 하며, 간행 횟수 또는 간행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학술지 간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게재 논문 및 논문별 디지털 식별 정보(Digital Object Identifier) 등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 : Korea Citation Index)에 등록해야 한다.

③ 기타 학술지의 간행 부수, 배포 대상기관 및 배포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장 저작권·연구윤리

제21조(저작권의 귀속) ①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 관련 판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[별지 제2호]의 "저작권 양도 동의서" 양식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해야 하며,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된다.

② 투고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 게재 등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22조(연구윤리)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투고 신청서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기입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,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5%

이상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,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내 전문가위원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③ 연구부정행위는 「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」 제6장에 따라 판단하며,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 삭제
2. 투고자의 향후 투고 금지(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3년)
3.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 차기호에 고시
4. 원고료 지급 거부 또는 환수

④ 특수관계인(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)이 공동저자인 경우, [별지 제10호]의 "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"를 제출해야 하고,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.

⑤ 「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」 제6장에 따라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연구 저자로 부정 등재([별지 제10호]의 "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"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)되어 해당 논문으로 입시·진학·취업 등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투고자 및 특수관계인의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(입시·진학·취업 등 관련 학교, 연구기관, 기업체 등)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부칙(전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심사하는 투고 논문부터 적용한다.